

등록번호 : 20221315

최초 등록일 : 2022.12.01 최종 등록일 : 2025.01.09

# 화신바베큐치킨

## 정 보 공 개 서

「㈜세기에프앤에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 ㈜세기에프앤에스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441번길 52, 4층(삼정동) [대표 전화번호] 1644-5231 [대표 팩스번호] 032-724-9771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관리팀 1644-5231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 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q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 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 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Ⅰ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상호	영업표지		주 소				
	화신바베큐치킨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441번길 52, 4층(삼정동)				
(주)세기에	외1		-			•	· ,
프앤에스	#10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	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1.08.26		2021.08.26	권태진	1644	-5231	032-724-9771
	법인등록번호	121	111-0415456	사업자등록	H번호	32	7-87-02281

## 2.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권태진 대표 (주)세기에프앤 에스	화신바베큐치킨 외1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441번길 52		
대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권태진	1644-5231	032-724-9771

## 3.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가맹사업을 인수함	다나통닭	다나통닭	2022.12월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공원로 26, 105호(용종동, ㈜골드프라자)	정영선

<sup>※ 2023.7</sup>월「다나통닭」에서「화신바베큐치킨」으로 영업표지가 변경되었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화신바베큐치킨	
상 호	화신바베큐치킨 OO점	
상표(서비스표)		상표출원 : 4020230115829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sup>※</sup> 당사의 상표, 간판, 마크, 로고 등에 대한 변경은 가맹점사업자와 사전협의 없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영업표지 등의 변경 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비용의 분 담비율을 결정하고, 가맹점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반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708,688	415,393	293,294	61,338	-205,884	-206,705
2022년	986,376	1,269,954	-283,578	616,358	-206,949	-223,546
2023년	981,622	1,933,497	-951,875	1,067,020	-862,734	1,016,702

그 근거자료는 별첨1[재무현황]과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가맹사업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금	연 역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관련 임원	권태진	대표	2021.08.~현재	(주)세기에프앤에스 대표	기업 총괄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점	상근	비상근	역전구(경)	
2023년 12월 31일	1	-	5	

## 8.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세기에 프앤에스	가맹사업 경영	예 정	킹덤버거(등록번호: 20213729)이라는 영업표지의 패스트푸드사업 경영
가맹본부 (당 브랜드)	(주)세기에 프앤에스	가맹사업 경영	2023.03.~현재	화신바베큐치킨(등록번호: 20221315)이라는 영업표지의 치킨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세기에 프앤에스	가맹사업 경영	※2023.7월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춘풍반점(등록번호: 20213694)이라는 영업표지의 중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세기에 프앤에스	가맹사업 경영	※2023.7월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닭게랑(등록번호: 20213693)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세기에 프앤에스	가맹사업 경영	※2023.7월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다한상(등록번호: 20213700)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세기에 프앤에스	가맹사업 경영	※2023.7월 정보공개서	프로빵스(등록번호: 20213674)이라는 영업표지의



	자진취소	제과제빵사업 경영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b>》 산바베큐치킨</b> (일반상표)	상표	출원 2023.06.29	출원 4020230115829	㈜세기에프앤 에스	출원 중

<sup>※</sup> 당사의 상표는 현재 출원 중으로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 1. 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23년 3월 7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22년 12월 20일)

※ 2023.7월 「다나통닭」에서 「화신바베큐치킨」으로 영업표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상기 가맹사업 시작한 날과 직영점 시작한 날은 「다나통닭」 가맹사업 현황입니다.

## 2. 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나옛날통닭	다나옛날통닭	정영선	예 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공원로
99,020	11223	002	M 0	26, 105호(용종동, ㈜골드프라자)
(주)세기에프앤	다나옛날통닭	권태진	예 정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441번길 52,
에스	니다것같중점	선내인	બા જ	4층(삼정동)
(주)세기에프앤	rlı l e cı	기대기	2022 2 2022 7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441번길 52,
에스	다나통닭	권태진	2023.3~2023.7	4층(삼정동)
(주)세기에프앤	화신바베큐치	기대지	2022 7 성제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441번길 52,
에스	킨	권태진	2023.7~현재	4층(삼정동)

## 3. 당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화신바베큐치킨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치킨	치킨	

##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지역	í	2021.12.31		i	2022.12.31		í	2023.12.31	
시탁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	1	2	-	2	11	10	1
서울	-	-	-	-	-	-	1	1	0
부산	ı	-	-	-	-	-	0	0	0
대구	-	-	-	-	-	-	0	0	0
인천	1	-	1	1	-	1	5	4	1
광주	-	-	-	-	-	-	0	0	0
대전	-	-	-	-	-	-	0	0	0
울산	-	-	-	-	-	-	0	0	0
세종	-	-	-	-	-	-	0	0	0
경기	-	-	-	1	-	1	3	3	0
강원	-	-	-	-	-	-	1	1	0
충북	-	-	-	-	-	-	0	0	0
충남	-	-	-	-	-	-	0	0	0
전북	-	-	-	-	-	-	0	0	0
전남		-	-	-	-	-	1	1	0
경북	_	-	-	-	-	-	0	0	0
경남	-	-	-	-	-	-	0	0	0
제주	-	-	-	-	-	-	0	0	0

※ 2023.7월 「다나통닭」에서 「화신바베큐치킨」으로 영업표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상기 가맹사업



현황은「다나통닭」가맹사업 현황입니다.

## 5.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	_	_	_	-	-
2022	-	-	-	-	-	-
2023	-	10	-	-	-	10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

## 6. (최근 3년 동안) 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사능 /이르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가당	맹점/직영점의	수
	상호/이름	8 립표시	등록번호	<u> </u>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세기에프 앤에스	킹덤버거	20213729	패스트푸드	-/1	-/-	-/-
가맹본부 (당 브랜드)	(주)세기에프 앤에스	화신바베큐 치킨	20221315	치킨	-/1	-/2	10/1
가맹본부	(주)세기에프 앤에스	춘풍반점	20213694	중식	-/-	-/-	※2023.7월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가맹본부	(주)세기에프 앤에스	닭게랑	20213693	한식	-/-	-/-	※2023.7월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가맹본부	(주)세기에프 앤에스	다한상	20213700	한식	-/-	-/-	※2023.7월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가맹본부	(주)세기에프 앤에스	프로빵스	20213674	제과제빵	-/-	-/-	※2023.7월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전년도 가명	생점사업자의 (	연간 평균	매출액		шп
지역	전년도말	연간평균 [	개출액	연간평균매출	·액(상한)	연간평균매결	들액(하한)	비고
시의	가맹점수	연간 평균	면적	상한	면적	하한	면적	
		매출액	3.3m <sup>2</sup> 당	0	3.3m <sup>2</sup> 당	아인	3.3m <sup>2</sup> 당	
전체	10	72,177	9,778	72,177	9,778	72,177	9,778	1
서울	1		해당없음(5곳 미만)					
부산	0	해당없음(5곳 미만)					0	
대구	0	해당없음(5곳 미만)					0	
인천	4	해당없음(5곳 미만)					1	
광주	0		해당없음(5곳 미만)					0
대전	0		해당없음(5곳 미만)					0
울산	0		해당없음(5곳 미만)					
세종	0		해당없음(5곳 미만)					0
경기	3	해당없음(5곳 미만)					0	
강원	1		해당없음(5곳 미만)					0
충북	0			해당없음(5곳	미만)			0
충남	0			해당없음(5곳	미만)			0



전북	0	해당없음(5곳 미만)	0
전남	1	해당없음(5곳 미만)	0
경북	0	해당없음(5곳 미만)	0
경남	0	해당없음(5곳 미만)	0
제주	0	해당없음(5곳 미만)	0

#### 8. 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 가맹사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0	129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 없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의 전년도 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9.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십시오.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sup>1</sup> 합계	단위: 천원, 부 가맹본부	부가세 미포함) 가맹점	비고
			합계		기하급	
합계		्रा (धास्त्रभा)	55,957	デー 部 ( <b>川</b> 子	-	
광	소계		55,957	<u> </u>	-	
판촉	소계		-	-	-	

<sup>※</sup> 당사는 킹덤버거, 화신바베큐치킨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기 광고판촉비용은 기업 전체 비용으로 당 가맹사업 관련 광고판촉비용은 이보다 적습니다.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농협은행	도당동지점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86 에스비타워 3층	032-683-4358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 │ │ │ │ │ │
----------------------



농협 계 <u>작</u> 가	매장 직접 방문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농협 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 금예치증서 교부 받아 보관	
계좌가 있는 사업자	인터넷 뱅킹 이용시	①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인터넷뱅킹 (http://banking.nonghyup.com) 접속 → ③(SOHO 센터) 클릭 → ④(가맹금 예치서비스)클릭 → ⑤(가맹점사업자서비스페이지 바로 가기)클릭 → ⑥가맹금예치신청서 내용 기입 후 예치가맹금 이체	
농협 없는	계좌가 사업자	농협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실행	

귀하는 또한 예치기관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 1.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 관련) 당사와 임원의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최근 3년 동안) 당사와 임원의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아래의 비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외비용:점포임대관련 비용]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5,500		반환되지 않음 (개점전 가맹본부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만 반환)		- 개점 전 가맹
교육비	2,750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교육진행 3일전 해지시 반환	- 가맹점의 모집을 위해 비용소모 - 본부의 대체출점	본부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
개점준비 수수료	2,200		반환되지 않음 (개점전 가맹본부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만 반환)	에 대한 기회비용	원되시 (6고 즉시 소멸
총계	10,450				

<sup>※</sup> 상기의 가맹비는 최초 가맹계약 당시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는 대가와 자료제공에 대한 대가, 노하우제공, 기타 개업지원 대가입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으며, 계약 종료시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현금)이행 보증금	5,000	계약체결 후 3일이내	가맹본부 및 관계회사에 대한 미지급금, 본부 대여물품에 대한 잔액 정산 후 상환, 기타 손해배상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보증금은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가맹비	7,700
교육비	2,750
개점준비 수수료	2,200
(현금)이행보증금	5,000
합계	12,65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품목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기준: 33m²[약 10평])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점포공사)	<i>협력업체</i> 등	19,800	1,980		공사 전 계약취소	면적, 구조에 따라 상이
시설 집기	<i>협력업체</i> 등	16,500	1,650			설비, 집기에 따라 상이
간판/사인	<b>협력업체</b> 등	5,500		별도협의	설치전 계약취소	간판 및 내부면적에 따라 상이
POS 등	험력업체	33			미설치시	설치 장비에 따라 상이
초도물품대 등	세기에프엔에스	4,800			발주 전 계약취소	면적 및 내부타입에 따라 상이
총계		46,633	별도협의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점포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별도비용 : 철거, 냉난방기, 전기/가스 증설, 덕트공사, 소방설비, 화장실, 외부공사(테라스, 자동문, 창호 포함), 주방순간온수기, 냉동창고, 어닝, 용도변경, 각종 인허가, 지방 체제비 등은 점포 여건에 따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당사의 관리감독 대가**로 3.3㎡ 기준으로 [220]천원(부가세 포함)을** 인테리어 공사 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도록 해야하며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① 가맹본부가 정한 브랜드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매뉴얼 및 사양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업체는 매뉴얼을 이해하고 공사를 원할하게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업체가 제공받는 인테리어 매뉴얼은 가맹본부의 중대한 영업비밀에 해당되며 유출 방지를 위하여 "디자인 유출 방지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별도 공사업체 선정시의 자격요건
- ① 2년 이상 시공경력이 있는 업체(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제출필)
- ②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보유한 법인업체 (면허 사본 제출 필수)
- ③ 공사 중의 사고로 점주에게 발생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재보험 가입한 업체 (증빙제출)
- ④ 공사 세부견적서를 사전제출
- ⑤ 공사 후 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 제출이 가능한 업체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권유 → 가맹점사업자 선정 ※ 점포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가맹점사업자부담입니다. -승인여부 사내 기준- 1)기존 점포와의 상권중복 여부 2)점포의 전용면적 적합성 3)점포의 위치: 1층 우선(상권이 우수한 경우 제한적으로 2층도 고려) 4)가시성 및 접근성 5)주변 동종업종 분포정도 6)기대수익에 대한 실현가능성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만19세 이상일 것 - 향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취득가능자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 만18세 이상일 것 - 향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취득가능자

※ 가맹점사업자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문제점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포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점포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에서는 가맹비 등을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8)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 [화신바베큐치킨]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9)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 담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9.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 업자측이 배분 하여 분담		미 시행시 반환	시행	V.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등	통지 후 7일 이내	미 시행시 반환	시행	V.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청구 (약 1日 165)	교육 실시 10일 이전	미 시행시 반환	시행	교육 필요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해당없음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지정업체( 미정)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Ⅶ.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지정업체( 미정)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I.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액 X 연[20]%	지급기일 익일부터	후불로 반환없음		
POS 사용료	협력업체	월 33~165	약정일 지급			

<sup>※</sup> 당사의 광고분담금이나 교육훈련비는 일정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사전통지를 하고 실비 수준에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전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운영관리	위생사고나 메뉴의 질 유지	수시	문의: 가맹관리팀
재고관리	식재료 보관/재고관리 적절성	수시	문의: 가맹관리팀
회계처리	가맹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수시	문의: 가맹관리팀

※ 당사는 위생사고나 메뉴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식재료 보관/재고관리의 적절성 등에 점검 및 보완에 대해 수시 점검 하며,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감독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당사는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시 추가비용이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 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 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나 권리의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가맹사업 상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 가맹본부는 이를 대체할수 있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제시하고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의 책임과 비용으로 간판, 점포 내.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포스터 등 영업표지와 관련된 시설을 교체하며 그 외에 가맹본부의 책임과 비용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 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①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문서에 의한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변경은 명의변경이 아닌 영업의 양수도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되는 법인'은 영업의 양수도와 관련한 절차의 준수 및 관련 비용을 다 시 지급해야 합니다.

- ② 가맹본부에서는 양수 받기를 희망하는 자의 적성이나 인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므로 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③ 본부의 승인에 의해 영업권을 양도 받는 자는,"가맹비등,교육비" 및 "이행보증금"을 가맹본 부에게 다시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 ※ 가맹비등, 교육비 및 이행보증금은 물가변동이나 가맹본부의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가맹본부는 민사상 혹은 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기타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종료 후의 조치	계약서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	
본부의 상호 . 브랜드 등 영업표지가 포함된 간판 및 부착물 등과 가맹본부의 고유	
한 디자인이나 노하우(지식재산권)가 포함된 익스테리어 및 인테리어가 있을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	
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과 매뉴얼 및 운영양식, 운영파일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문서 등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지체 일(日) 당 일금 일십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연 손해금으로 가맹	TII 2 0 T
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
②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로부터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잔존	
채무 . 손해배상액의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제1항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가	
맹본부가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철거 . 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인하여 종료한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된 원 .	
부재료 등의 중에서 완전물을 가맹본부에 반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ᅰ᠈ᇰᅎ
공급가격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	제28조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단위;원)	비고
해당없음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당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당사가 당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 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없음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 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ㆍ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4[판매상품리스트]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및 미시정시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1회 위반: 구두 경고	
다른 가맹점사업자 등	※별첨4[공급상품	기재된 제품은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	
소비자 외 제3자	리스트] 참조	판매할 수 없음	요구 및 미시정시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 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 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4[판매상품리스트]		점주카페에 공지 및	2024.1월 기준
참조		공문으로 발송	2024.1월 기년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 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치킨전문점 화신바베큐치킨		해당없음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계약매장에서 <b>반경 500m</b> 를 원칙[영업지역 내에 있는 백화점, 대형	
마트, 쇼핑몰 및 병원 등 대규모점포(매장면적의 합계가 1,650㎡ 이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며
상일 것)와 역사(기차, 지하철)및 공항의 시설은 별도의 영업지역으	지도별첨이 없을 경우 계약서 상의 영업지역 설정기준에 따름
로 영업지역에서 제외]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 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ol> <li>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li> <li>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li> <li>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li> <li>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아) 자성 → 가매정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 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 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해당없음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해당없음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미	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약 22%	약 78%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 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ا ا ۱ ۱ ۱ ۱ ۱ ۱ ۱ ۱ ۱ ۱ ۱ ۱ ۱ ۱ ۱ ۱ ۱ ۱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
예→B, 아니오→®	D-10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D-60일 이전
예→E, 아니오→A	D-00일 이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del>-</del>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관련 계약조문 36조

-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3.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 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4.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6.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가맹점사업자 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 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함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관련 계약조문 37조 1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원・부재료비, 교육비, 가맹비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3.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허위로 통지하는



#### 경우

- 4.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 5.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6.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영업양도, 승계, 담보제공, 사업자위치변경을 한 경우
- 7. 영업상 비밀보호의무 위반이나 경업금지 위반을 한 경우
-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개량・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11.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부재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품질기 준을 위반한 경우
- 12.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공방법, 종류(메뉴 등), 판매방법, 서비스방법을 준 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는 경우
- 1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을 위반한 경우
- 1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관련 계약조문 37조 2항 [즉시계약 해지 사유]

-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한다.
-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 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 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 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 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6조 [계약 수정 사유] ○ 이 계약의 내용은 양당사자 모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만 변경될 수 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 해당 없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무인이 당사가 정안 가   매저 으여 기즈의 즈스하 거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 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 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절차 완료	
업무위탁	불가능	-		

※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전 지역 내에서 귀하가 [화신바베큐치킨]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치킨전문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통지 → 완료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4:00 ~ 23:00 (일 영업시간 8시간 이상) ※상권에 따라 사전 협의	월 26일(2월은 24일) 이상 영업일 준수	문의: 가맹관리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디
1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점포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점포운영상태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각 지역 가맹관리팀	통상 QSC 관리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당 가맹사업의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丁正	8보 8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군급 크시	- U-T-
	브랜드 및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수비용에 따라 분담	광고 계획 공고 →	대중매체 광고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가맹점모집 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수비용에 따라 분담	의료 계획 공요 → 가맹점의 광고참여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광고 → 사후결과 공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선숙 경작)
판촉 전체 행사	통상적인 전체 행사	균등부담	균등부담	판촉 계획 공고 → 가맹점의 참여 → 가맹점부담액 제시 → 판촉 → 사후결과 공고	전체 판촉 행사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상기 분단절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 관련 계약조문 제25조 (판촉)

④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 자는 판촉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 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계약조문 제39조

-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조리법, 제조법, 운영시스템, 매뉴얼 등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 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계약서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서면에 의한 양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계약	
위반, 일방적해지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제41조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12. 가맹본부의 가맹점 매출자료 열람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가맹점 매출자료 열람 요청시매출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가맹점 매출자료 열람 목적은 하기와 같습니다.

- ·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 · 가맹점사업자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단, 가맹본부는 매출자료 열람 목적이외의 사유로 자료를 열람할 수 없으며, 위반시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3. 향후 본부 POS 구축시의 비용 부담 관련 사항

- ·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본부지정 POS업체 및 시스템(프로그램,기기장비,VAN사)을 도입, 개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이 경우 이에 필요한 투자금액 및 관련 비용은 같이 부담하기로 합의합니다.
- · 가맹본부의 지정 POS업체 및 시스템 등(프로그램,기기장비,VAN사)을 도입할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본부 지정 POS업체 및 시스템 등으로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 Ⅵ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0일 내외	10페이지 참조
가맹점 문의	- 가맹전화/홈페이지 기타 플랫폼 문의 - 간단한 정보제공 및 본사 설명회 참석요청 - 정보공개서 제공	D-50	
창업설명회 및 개별상담	- 브랜드소개 및 전반적인 사업 설명	D-45	
점포개발	- 부동산방문/점포요청 - 점포방문/상권확인 등	필요시 실시	
점포방문	- 가맹점 주소지로 된 점포 계약시 - 적합성 판단 및 사전분석 - 승인여부 내부결정	D-45~D-30	
최종 협의	- 계약전 최종 협의 후 가맹계약서 제공	D-35	
계약 체결	-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14일 이후 진행	D-35	
가맹금 등 비용 예치	- 가맹본부내 계좌 안내 및 예치	D-35~D-30	9페이지 참조
점포실측/설계	- 인테리어 등 공사업체 선정 - 점포 실측/설계/견적서 작성	D-30~D-25	10페이지 참조
인허가 서류 취득	- 이허가 기과 반무		10페이지 참조
도면 협의 등	- 점포 도면 협의	D-25	10페이지 참조
인테리어 등 공사	- 공사 실시(인테리어/간판/사인/전산 등)	D-25~D-5	10페이지 참조
브랜드 교육 실시	- 조리실습 및 이론 교육 실시 - TEST진행 (재교육 필요성 확인)	D-15~D-10	
개점	- 브랜드 오픈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 가맹사업의 분쟁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계약조문 제42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 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유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
	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ㅇ간판교체 비용
비용항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
	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
	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비용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
제외사유	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
	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판촉장려금	해당없음				
판촉지원	해당없음				
판매용 집기	해당없음				
무상대여	M O W =				
반품지원	해당없음				
마일리지	해당없음				※차후
CRM	해당없음				진행시



테스터	해당없음		사전협의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 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 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 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 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문의: 가맹관리 팀
가맹점사 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 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 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 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 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 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 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부담	문의: 가맹관리 팀

## 4. 신용 제공 등 내역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해당없음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없음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 점포 운영 개요 - 조리실습 및 이론교육 - 점포 운영 관리 - 발주 및 기타 시스템 - 위생 및 안전교육	- 집합교육 - 이론 및 실습	개점 전 교육 이수	필수 교육
보수교육 (전 점포)	- 신메뉴 출시 교육	- 집합교육 - 온라인 교육 - 레시피 자료제공		필수 교육
보수교육 (점포 문제 발생시)	- 클레임 발생 - 위생, 안전 문제 발생 - 서비스 컴플레인 발생시	- 집합교육 - 이론 및 실습	가맹본부 요청 즉시	필수 교육
현장교육 (비용발생)	- 점포 운영상의 문제 발생시	- 가맹점 현장점검 /교육	가맹본부 요청 즉시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6일	2,750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	필요 시 실시	실비 청구 (약 1日 165)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sup>※</sup> 수시교육은 비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필요시 실비수준으로 책정된 금액을 사전통지 하며, 교통비, 숙식비는 개별 부담임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불참할 경우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7조 (계약의 해지)
그의 중점이 조소에 과항 기메보다이 없어바치의 지기가 이나한 것이	제36조 (계약의 갱신과 거
교육 · 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	게4.4. 지나 소이
우 개업이 거부되거나 보류될 수 있다	7 제14조 (개시 승인)



## Ⅳ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인천	계양본점	인청광역시 계양구 오조산공원로 26, 골드프라자 1층

<sup>※ 2023.7</sup>월「다나통닭」에서「화신바베큐치킨」으로 영업표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상기 직영점현황 은「다나통닭」가맹사업 현황입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77	2023년 기준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417,736	2023년 기준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 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첨1] 재무현황 전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별첨2] 필수설비/집기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별첨3] 공급상품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별첨4] 판매상품 리스트

	메뉴명	메뉴가격	비고
	소금 바베큐치킨	-	기본
	양념 바베큐치킨	-	맵기 1단계/2단계/3단계
l 바베큐	데리 바베큐치킨	-	맵기 1단계/2단계/3단계
치킨	마라 바베큐치킨	-	맵기 1단계/2단계/3단계
(뼈)	천불 바베큐치킨	-	맵기 1단계/2단계/3단계
	콘치즈 바베큐치킨	-	맵기 1단계/2단계/3단계
	불마늘 바베큐치킨	-	맵기 1단계/2단계/3단계
	순살 소금 바베큐치킨	-	기본
	순살 양념 바베큐치킨	-	맵기 1단계/2단계/3단계
바베크	순살 데리 바베큐치킨	-	맵기 1단계/2단계/3단계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순살 마라 바베큐치킨	-	맵기 1단계/2단계/3단계
(순살)	순살 천불 바베큐치킨	-	맵기 1단계/2단계/3단계
	순살 콘치즈 바베큐치킨	-	맵기 1단계/2단계/3단계
	순살 불마늘 바베큐치킨	-	맵기 1단계/2단계/3단계
	바삭한 후라이드치킨	-	기본
호라이드	레트로 양념치킨	-	기본
치킨	스위트 간장치킨	-	기본
(순살)	천불파닭 치킨	-	기본
	상하이 땡초 유린기치킨	-	기본
트리플 딜라이트 박스	트리플 딜라이트 박스	-	기본
	화신 양념 치밥	-	맵기 1단계/2단계/3단계
	화신 데리 치밥	-	맵기 1단계/2단계/3단계
	화신 마라 치밥		맵기 1단계/2단계/3단계
	화신 천불 치밥		맵기 1단계/2단계/3단계
시사	화신 콘치즈 치밥	-	맵기 1단계/2단계/3단계
7/1	화신 불마늘 치밥	-	맵기 1단계/2단계/3단계
	화신 누들	-	맵기 1단계/2단계/3단계
	화신 데리 누들	-	맵기 1단계/2단계/3단계
	화신 마라 누들	-	맵기 1단계/2단계/3단계
	불마늘 바베큐치킨	맵기 1단계/2단계/3단계	
	닭발 A set (무뼈/국물 택1)	-	닭발+김가루밥+쿨피스
안주	닭발 B set (무뼈/국물 택1)	-	닭발+대파+김가루밥+쿨피스
	닭발 C set (무뼈/국물 택1)	_	닭발+대파+김가루밥+쿨피스+계란찜
	대접밥	-	
	양배추샐러드	-	
HOLE	계란찜	-	
작이트   메뉴	김가루밥	_	
	스크램블밥	-	
	감자튀김	-	



1	또띠아 쌈 set	_	
	치즈볼	-	
	감G튀김	-	
	국물떡볶이	-	
	대파사리	-	
	떡사리	-	
	고구마사리	-	
	비엔나소시지	-	
	후랑크소시지	-	
사리 추가	김말이튀김	-	
수가	다진마늘사리	-	
	구운마늘사리	-	
	볶음우동면	-	
	치즈사리	-	
	콘치즈사리	-	
	마요네즈	-	
	생맥주500cc	-	
	참이슬	-	
	처음처럼	-	
, , , , , , , , , , , , , , , , , , ,	진로	-	
주류	새로	-	
	카스 500ml	-	
	테라 500ml	-	
	켈리 500ml	-	
	콜라 245ml	-	
	콜라 500ml		
음료	콜라 1.25L	-	
	사이다 500ml	-	
	사이다 1.25L	-	
	쿨피스 230ml	-	10 1170 77117 00

<sup>※</sup> 상기의 판매상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있음

<sup>※</sup> 권장가격은 추후 별도 고지합니다.



## [별첨5] 가맹점리스트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별첨6] 예치신청서

[서식] (앞 쪽)

- 1 1-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g ロ c	세시선수	8/1		즉시
	상호(가맹점)명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
	상호명(영업표지)					
가맹 본부	성명(대표자)					
본부	주소(사무소)				(전화:	)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맹사업거래의 공정 제2항에 따라 위외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또는 인)
					બોર્ટ	지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확인서

[화신바베큐치킨]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규정에 따라 아래의 수령인(가맹희망자)에게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합니다.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상기 수령역	인(가맹희망자	)은 아래의	내용을 기지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 ), 가맹계	약서( )	), 인근가맹점	l현황문서(	)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 예시 : :	상기 정보를 기	제공받았음	; )			
제공일	20 년	월	일	제공장소		
			가맹본부	:	(인) 5	또는 서명
			수 령 인	:	(인) 5	도는 서명
			······ (절추	선)		
전	보고개서 •	, 가맨거	l야서 • 이	그가매저	<u></u> 현황문서 수령확인서	
	, .				따라 아래의 수령인(가맹희망	사)에게
당 가맹사업	의 <u>정보공개서</u>	・가맹계익	<u> </u>	<u>맹점현황문서</u>	를 제공합니다.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상기 수령인	인(가맹희망자	)은 아래의	내용을 기자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 ), 가맹계	약서( )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 예시 : :	상기 정보를 기	제공받았음	<del>;</del> )			
1						
제공일	20 년	월	일	제공장소		
제공일	20 년	월	<sup>일</sup> 가맹본부		(인) 또	는 서명